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 1월 20일(금)부터 ~ 1월 26일(목)까지입니다”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2년 1월 26일(목)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행정실로 제출해 주세요!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3년 1월 15일(일) 오픈 예정]

-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킷메뉴 》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국번없이 126 → 5 → 1
 - ▶ 연말정산 세법상담 : 국번없이 126 → 5 → 2
 - ▶ 익산세무서 : (063)840-0200, 840-0405
 - ▶ 연말정산 종합안내 : [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https://nts.go.kr)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일) 오픈될 예정(2023년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 **확정 소득자료 2023.1.20.(금)**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2020년 연말정산부터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입력 요함
-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3. 1. 18.(수) ~ 1. 26.(목)까지

- ▶ 홈텍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3. 1. 15. (일) 오픈 예정
- ▶ 2023년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아 입력 권장: 1월 20일(금) 자료확정
- ▶ 행정실 서류 제출기간: 2023. 1. 20.(금) ~ 1. 26(목) ★★★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업로드로 진행 합니다.

1.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 ▶ 본인 공인인증서등록 방법→홈텍스 상단 로그인 클릭→공인인증서등록→주민등록번호입력→등록하기 →해당공인인증서선택후→확인
-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2020년 연말정산부터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텍스 접속이 가능),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를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발급(근로자)

1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하단에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보입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는 국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회사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를 선택하세요.

조세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3. 귀속년도 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비밀번호 없이, 파일명은 2022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7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귀속년도 2022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미만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조회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원만 선택

·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

보통연금에서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step 3. 내용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

PDF파일로 다운로드 저장

ex) 파일명 : 2022년 연말정산(홍길동)

4. 나이스 접속→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2년→조회→PDF업로드→ 찾기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22년 연말정산 홍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 되어 있어야함
-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입력시 유의 사항 👈

-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
 - 홈텍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 해야함(홈텍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
 -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
- 홈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 750308-1234567 →7503081234567

제 출 서 류

제출기한	2023년 1월 20일(금) ~ 1월 26일(목)	
입력기간	2023년 1월 18일(수) ~ 1월 26일(목)	
제출서류	대상	방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실손의료비 포함 체크)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전입자 및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있는 분 제출	☞ 정부24 : www.gov.kr : 인적공제 추가 시, 본인 외 의료비 공제 시, 주택청약 공제 시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⑦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도 출력해서 제출 요함"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 구체적인 개정세법과 과다공제 유형 등은 【참고 1, 5】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 소비증가분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 효과

- ◆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 ⇒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 25% = 1,750만 원
 -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500만 원** [㉗ 일반 소득공제(300만 원) + ㉘ 추가 소득공제(200만 원)]
 - ㉗ (3,000만 원 - 1,750만 원) × 15% + 500만 원 × 40% + (3,500만 원 - 2,000만 원 × 105%) × 20% + (500만 원 - 400만 원 × 105%) × 20% = 684만 원 (한도 **300만 원**)
 - ㉘ Min[한도초과액(684만 원 - 300만 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100만 원**] + Min[한도초과액 (684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296만 원, **100만 원**] = **200만 원**
 - 3) 개정 효과 : **112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388만 원 → (개정후) 500만 원]

【유의할 사항】

-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계산 사례는 【참고 2】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유의할 사항】

-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3】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지출 대상	한도	공제율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유의할 사항】

-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4】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 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 원 \times 20\% + (1,500만 원 - 1,000만 원) \times 35\%] = 375만 원$
	2) 개정 효과: 75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300만 원 → (개정후) 375만 원]

【유의할 사항】

-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계산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 C는 '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 원 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50만 원 \times 12개월) \times 17\% = 102만 원$
	2) 개정 효과: 3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72만 원 → (개정후) 102만 원]

【유의할 사항】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